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5,700,000	28,971,000
일반회계	779,800,000	23,394,000
특별회계	185,900,000	5,577,000
공기업특별회계	48,100,000	1,443,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800,000	744,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300,000	699,000
기타특별회계	137,800,000	4,134,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379,000	131,37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443,000	73,2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71,000	29,13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365,000	100,950
주택사업특별회계	843,000	25,290
치수사업특별회계	17,952,000	538,56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6,032,000	180,960
대지보상특별회계	308,000	9,24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9,271,000	2,678,13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900,000	357,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6,000	10,08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68,430천원으로 한다.